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348호(號) 1931(昭和 6)년 7월 4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49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68호(號)(일본·만주 국제여객 및 수하물 연락운수규칙[日滿國際旅客及手荷物聯絡運輸規則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1(昭和 6)년 7월 4일

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37조(條) 일본국유철도(日本國有鐵道), 조선총독부철도(朝鮮總督府鐵道) 및 남만주철도주식회사(南滿洲鐵道株式會社) 선내(線內)에서는 20인(人) 이상(以上) 50인(人) 미만(未滿)의 단체(團體)에 대(對)하여는 내(內) 1인(人), 50인(人) 이상(以上)의 단체(團體)에 대하여는 50인(人)마다 내(內) 1인(人)을 감독자(監督者)로 하여 무임(無賃)으로 승차선(乘車船)하게 함. 전항(前項)의 감독자(監督者)는 5인(人)을 한도(限度)로 함.